

5. 소득세법중 개정법률

법률 제5,424호 1997. 12. 13

주 요 골 자

- 가. 영유아보호법상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료에 대하여도 유아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로 함(법 제52조제1항 및 제6항).
- 나. 개인소장가의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년간 유상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(법률 제503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).

개 정 이 유

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료에 대하여도 유아원아동과 동일하게 연 70만원까지의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인정하고,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원포착을 뒤한 서화·골동품의 유통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함.

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“학생(대학원생

을 제외한다)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·수업료

기타 공납금.” “학생(대학원생을 제외한다)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(이하 이 조에서 “영유아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·수업료·보육비용 기타 공납금.”으로 하고, 동호 단서중 “유치원아”를 “유치원아 또는 영유아”로 하며,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영유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 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.

법률 제5031호 소득세법증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“1998년 1월 1일”을 “2001년 1월 1일”로 한다.

- 부 칙 -

- ①(시행일)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특별공제에 대한 적용예) 제52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주택회보